

제삼자가 저지른 방화도 보험금 지급돼

1. 머리말

우리나라의 화재발생 건수는 지난 해 1만 4천여 건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고의적인 방화(放火)가 차지하는 비율이 증대되고 있어, 화재보험가입자는 물론 일반 소비자들도 방화와 관련이 되는 보상문제 등에 많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이 소고에서는 방화에 수반한 여러가지 문제점을 간략하게 검토해 봄으로써 보험가입자나 보험회사에 분쟁의 원인을 사전에 방지해 하는 지식을 제공하고, 일반 대중에게는 보험과 고의적 사고인 방화와의 관계를 소상히 일깨워 줌으로써 올바른 위험관리와 방재지식을 전하고자 한다.

2. 방화의 정의와 특성

가. 방화의 정의와 한계

화재는 전기, 유류, 담배, 난로, 아궁이, 양초·성냥, 가스, 화공약품 등의 물리적 위험(Physical Hazard)에 인간의 부주의, 태만 등과 같은 방관적 위험(Moral Hazard)이 겹쳐서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강원희
〈한국보험학회 이사〉

그러나 방화는 그 화재발생에 인간의 고의적인 작용이 있었다는 것이 다르다. 따라서 방화의 원인은 우연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도덕적 위험(Moral Hazard) 또는 범법적 위험이라고도 하고 있다.

방화의 원인을 살펴보면 주로 자기의 정신적 만족을 얻기 위한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종류로 분류되고 있다.

- (1) 원한, 질투 (2) 가정불화
- (3) 염세 (4) 일시적 정신착란, 정신병, 방화광(放火狂)
- 정치, 경제, 기타 범죄에 이용되는 종류는 다음과 같다.
- (1) 학생데모나 노사분규
- (2) 범죄의 증거인멸
- (3) 강절도 수반행위

이상은 화재보험에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분류한 것이나 이를 화재보험과 연관해서 보면

- (1) 철거예정인 건물에 대한 방화
- (2) 화재후에 소실수량의 파악이 어려운 동산에 초과보험을 계약한 후에 저지른 방화
- (3) 사장품(Dead Stock)을 없애기 위한 방화 등이 있다.

또 방화를 누가 했는가에 따라 자방화(自放火)와 타방화(他放火)로 분류하는데, 자방화는 자기 소유물에 소유자가 방화를 하는 것이고, 타방화는 제삼자가 방화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나. 방화의 증가추세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전체 출화건수에서 차지하는 방화의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으나 선진국의 예를 보더라도 방화는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7년도의 전체 출화건수에 대한 방화의 점유비는 우리나라가 775건에 8.77% 인데 비해 일본은 확실한 방화가 8.21%, 여기에 방화 의심이 가는 화재까지 포함하면 14.58%나 된다.

3. 화재보험과 방화

화재보험이 보급됨에 따라 방화 사고에 있어서의 보험과의 관계는 어떠한가를 살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출화건수에 대한 방화 점유비 <1987년도>

국별	출화건수	방 화 건 수			방 화 점유 비	
		방화	방화혐의	계	방화	방화혐의
한국	8,838 건	775 건	—	775 건	8.77 %	—
일본	63,272 건	5,194 건	4,032 건	9,226 건	8.21 %	6.37 %

가. 방화로 인한 피해의 보상범위

일반적으로 화재보험계약은 보험에 가입한 물건이 화재로 인해서 소실되었을 경우에는 그 원인이 무엇이든 손해를 보상해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원칙을 「위험보편의 원칙」이라고 한다.

따라서 화재가 방화로 발생한 경우라도 당연히 보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어떠한 방화라도 무조건 보험금을 지급한다면 보험을 엄청나게 가입하고 나서 그 보험금을 타기 위한 방화사건이 빈발할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사회의 공공질서가 무너지고, 화재보험이 범죄를 유발하게 되기 때문에 방화에 대해서는 약관상에 다음과 같이 면책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나. 약관상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

(1)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의 방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가 저지른 방화는 보험금을 타기 위한 것이 아니라도 보상받지 못한다. 따라서 가정불화로 부부싸움끝에 남편이 방화를 하였고, 그 남편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라면 보험금을 탈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가 아닌 부인의 방화라면 보상을 받게 된다. 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가 법인(法人)이라면 대표이사의 방화뿐

만 아니라 이사의 방화도 면책이 된다. 법인의 경우는 주식회사 형태 외에도 총재, 교회의 당목사, 사찰의 주지 등도 포함이 된다. 또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의 법정대리인(위임에 의하지 않는 민법상의 대리인-친권자, 후견인, 재산관리인 등)이 방화를 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타기 위한 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면책이 되는데, 이것은 이들 법정대리인도 보험의 목적에 대한 실질적 권한이 있기 때문이다.

(2)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탈 수 있도록 친족등이 저지른 방화

피보험자와 같은 세대에 있는 친족이나 고용인이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타도록 방화를 하였다면 보험회사의 면책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조항은 방화에 대해서 피보험자와 공모(共謀)를 하였을 경우에만 해당이 된다. 따라서 방화를 한 친족등이 자기 혼자 의사로 방화를 하였다면 보험금은 지급이 된다. 다만 피보험자가 이들이 방화를 하는데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피보험자측에서 입증해야 한다. 즉 모든 면책조항의 입증책임은 보험회사측에 있는 것이지만, 이 조항만은 피보험자측에서 입증하고 보험금을 타야 하기 때문에 이른바 입증책임(立證責任)의 전환(轉換)이라고 할 수 있다.

(3) 제삼자에 의한 방화

같은 방화라도 제삼자에 의한 방화는 보상을 받는다. 따라서 1990년도에 한때 크게 번졌던 전국 곳곳의 방화사건은, 화재보험에 가입해 있었다면 보상의 대상이 되었음은 물론이고, 개중에는 보험금을 수령한 것도 있었다.

그러나 화재보험에서는 이상위험(異常危險)에 의한 방화 등은 보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는데, 이러한 위험까지 담보할 경우 막대한 보험금의 지급사례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만큼 보험료가 비싸지는 것을 피하는데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전쟁, 폭동, 소요 등에 부수해서 생긴 방화 등은 특약에 가입하고 할증보험료를 지급하지 않는 한 면책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학생데모등에서 화염병으로 생긴 화재는 바로 이와 같은 방화에 해당되기 때문에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는 면책이 되는 것이다.

4. 방화로 인한 손해에 대한 보상절차

화재사고가 방화에 기인하였을 경우, 약관상 면책에 해당되지 않으면 일반적인 보상절차와 같은 과정을 거쳐, 보험금이 지급된다. 방화가 약관상의 면책에 해당된다는 입증책임이 보험회사에게 있음은 전술한 바와 같다. 따라서 소방서나 경찰관서의 조사에서 분명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을 경우

「원인미상」이나 「원인불명」으로 남아있는 때도 있는데, 이러한 사례에서도 보험회사는 원인이 약관상의 면책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제삼자의 방화로 보험의 목적이 손해를 입어 보험금을 수령한 피보험자는 자기가 그 제삼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보험회사에 이양해야 되고, 보험회사는 그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한 후 이를 행사하게 된다.

5. 화재보험과 방화대응상의 문제점

가. 방화의 피해보상에 대한 일반소비자의 인식부족

흔히 일반소비자나 보험가입자들은 방화에 의한 화재손해는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수가 많다. 따라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의 고의나 중과실 또는 피보험자와 공모해서 저지른 친족등의 방화 외에는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일반에게 알려져야 할 것이다. 다른 사람의 방화는 전쟁이나 폭동, 소요사태 외에는 면책이 안된다는 사실도 이해시켜야 한다. 근간에도 크고 작은 방화사건이 있었는데도 화재보험에 부보된 사실이 적은 것을 보아서도 우리나라 화재보험의 보급률이 얼마나 낮은가

하는 것을 짐작케 한다고 하겠다.

나. 보험가입자의 방화 악용사례의 증가와 보험회사의 대응력 부족

1979년도부터 약 3년 8개월간에 4번의 방화사건으로 약 16억원의 보험금을 사취한 김용구(金容九)씨 일가족이 저지른 범죄는 경찰서의 화재감식도 통과한 후 매번 버젓이 보험금을 수령해 갔었으나 공모자 내부의 분배금(分配金) 싸움으로 경찰에 제보되어 백일하에 드러난 바 있으며 이 사건 외에도 보험금 사기사건은 계속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인들은 경찰서의 협조를 얻어 보험금 사취를 위한 방화를 가려 낼 수 있는 화재감식능력과 함께 이른바 Inspector(손해조사인)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방화의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접근으로 이를 입증함으로써 질이 나쁜 보험가입자의 의도를 좌절시켜야 한다. 그러나 막연한 의심과 심증(心證)만으로 선의의 보험가입자에게 피해를 준다면 이것이 널리 전파됨으로써 보험회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골만 깊게 파는 결과를 낼 것이다.

다. 방화사고에 대한 대응력 강화

방화사고의 경우에는 보상할 수 있는 사고냐, 보상할 수 없는 사

고냐를 명백하게 밝혀서 보험가입자를 납득시킬 수 있는 기술적인 대응력을 마련해야 한다. 보험을 악용하려는 행위는 끝까지 색출해야 되나, 자칫하면 선의의 가입자가 피해를 입음으로 이러한 결점을 보완하기 위해 하루 빨리 know-how를 축적해야 한다.

라. 화재보험의 보급과 소요사태의 방화담보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도 학원소요등으로 인한 화염병 화재의 위험이 많다. 이것은 보통약관에서 면책으로 하고, 특약으로 인수하게 되어 있으나 인수되는 사례는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화재보험의 보급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위험도 손보업체가 공동으로 인수해 봄으로써 화재보험의 보급을 보다 더 확대할 수 있는 적극적인 계기를 마련하였으면 하는 것이다. 또한 운영여하에 따라서는 채산성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6. 맺는 말

이상 언급한 대로 화재보험에 있어서의 방화는 도덕적 위험의 하나임에 틀림없으나 제삼자가 저지른 방화는 보험금지급의 대상이라는 점이 일반 소비자에게 널리 알려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를 악용할 수 없다는 사실도 충분히 알려 질 때 화재보험의 보급은 올바른 발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